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36호의3서식] <신설 2014.1.17>

(앞 쪽)

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

(단위: kg)

①공동수집·운반내용				공동처리내용											보관량	결재	
				②위탁처리				③공동자가처리				④부산물처리					
연월일	배출 업소명	배출업소 소재지	수집·운반량	위탁량	처리업소		처리량 누계	연월일	처리방법		처리량 누계	발생량	처리 방법	처리 장소	처리량		
					업소명	업종			처리 방법	처리량							

364㎜×257 ㎜[백상지80g/㎡(재활용품)])

작 성 방 법

1.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,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적습니다.
2. ①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·운반하는 경우에 배출업소명과 수집·운반량 등을 적습니다.
3. ②란은 공동으로 수집·운반하여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 재활용업소에 위탁한 양과 처리업소명·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적되, 공동으로 수집한 폐기물이 어떤 처리업소로 운반이 되었는지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.
4. ③란은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날짜별로 처리방법, 처리량 등을 적습니다.
5. ④란은 공동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등 처리잔재물의 양과 처리방법, 처리장소 등을 적습니다.